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의 성과와 과제*

김 엘 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발표의 대상과 관점 및 방법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시행 후 2015년 6월 현재까지 11회 개정(타법 개정 9회 포함; 20회 개정)되었고, 「가정폭력방지법」은 시행 후 2015년 6월 현재까지 11회 개정(타법 개정 7회 포함; 18회 개정)되어 법제의 쇄신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법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거나 미봉책이 아니라 법의 목적, 가정폭력과 가정구성원의 개념정의, 가정폭력 처리의 관점, 가정폭력에 관한 사법제도와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법의 시행기관인 사법기관과 상담기관의 점검, 실태조사와 정책추진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도 가정폭력의 행위자의 다수는 남성이며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가정폭력의 특징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발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II.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의 성과

1.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 성과

(1) 가정폭력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 증대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이 계속됨에 따라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누구든지 사법기관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점차 증대되었고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본소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을 맞아 지난 6월 본소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거대담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표문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2)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변화

「가정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특례를 두어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제2항). 그리하여 가족관계에 폭력을 규제하고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변화시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3) 가정폭력에 관한 사법제도의 발전

가정폭력범죄 중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례를 두지 않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발전시켰다. 제5조(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검사의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2011.7.25. 신설), 제9조(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011.4.12. 신설), 제22조 제2항(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 제29조(임시조치),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2011.7.25. 신설), 제57조(배상명령) 등에 따른 사법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4) 가정폭력에 관한 판례의 발전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 후 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는 판결들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판례의 진보적 변화는 부부사이의 강간죄 인정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증후군의 인정에 관한 판례에서 볼 수 있다.

1) 부부사이의 강간죄 인정에 관한 판례의 변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40대 한국인 남편이 20대의 필리핀 출신의 처를 심하게 폭행하고 흥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교행위를 한 사건에 관한 2009년의 부산지방법원 판결(2009.1.16. 선고 2008고합808)이다.

그 후 2009년의 대법원 판결(209.2.12 선고 2008도8601)은 처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날 새벽에 남편이 성관계를 거절한 처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한 사건에서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된다고 했다.

그 후 2012년 1월 17일에 「가정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범죄에 강간과 추행의 죄를 포함하여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도 국가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증후군의 인정에 관한 판례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다.

(5)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중요성 부각

「가정폭력처벌법」은 제정될 때부터 보호처분에 상담위탁을 포함시켰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포함한 120여 개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정을 위한 가정폭력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위탁에 의한 상담을 통하여 가해자의 가부장성 효과가 뚜렷하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은 2007년 8월 3일에 개정될 때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9조의2)을 신설하였다.

(6) 가정폭력의 발생 감소

「가정폭력처벌법」의 시행으로 가정폭력의 발생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측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법 시행 후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가 늘어났다고 하여 법의 시행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고소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또한 법의 시행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성과

(1)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발전

「가정폭력방지법」은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제1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할 의무도 부과하였다(제2항).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추진과제는 1)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2)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전문성 확보(경찰청), 3) 가해자 엄정 대처 및 책임성 강화(법무부, 경찰청), 4)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법무부), 5)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등을 통한 보호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경찰청), 6) 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2012년의 재범률은 32.2%)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발전

「가정폭력방지법」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2005.4.28. 신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의6(긴급전화 센터의 설치·운영 등, 2009.5.8. 신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2010.2.4. 신설),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2009.5.8. 신설), 제18조(치료보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발전

「가정폭력방지법」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될 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 후 2010년 5월 17일 법 개정 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4조의3 제2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의3 제3항,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조의3 제4항)도 신설하였다.

2014년 1월 21일의 법 개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2014.5.28.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제4조의3 제2항).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설된 조항(제4조의3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실시

「가정폭력방지법」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될 때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조의2 제1항)을 신설하였다.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1)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제7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제4조 제4항),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조).

2) 상담소는 ①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④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들의 임시 보호, ⑤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의 업무를 하는데, 2013년 7월 30일의 법개정으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업무가 추가되었다(제6조). 상담소는 2006년에 372개소 있었는데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 251개소, 2011년에 244개소, 2012년에 228개소 있다.

3) 보호시설의 업무는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⑧ 그 밖에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제8조 제1항).

보호시설은 2006년에 59개소 있었는데 2007년에 70개로 늘어났다가 2010년에 64개소, 2011년에 65개소, 2012

년에는 66개소가 있다.

4) 「가정폭력방지법」은 2009년 5월 8일 개정될 때 “여성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의 6)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여성긴급전화 1366은 1998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는데 2015년 현재 중앙센터 1개소, 18개소의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가정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 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1577-1366)는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 현재 중앙센터 1개소, 6개소의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Ⅲ. 가정폭력특별법의 과제

1. 가정폭력처벌법의 과제

(1)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1) 목적 규정의 재구성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향후 재구성이 필요하다.

- ①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가정의 해체를 피하고 가정의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인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어떻게,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보호처분”을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라고 수정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② “건강한 가정”이 의미하는 바도 모호하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이 「가정폭력특별법」의 목적이자 기본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③ 목적 규정(제1조)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에서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2조에서는 “가정구성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2)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관계 정립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구조는 다음과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 ①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족관계의 특수한 친밀성과 신뢰관계, 가정폭력의 상시 발생가능성,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법으로 입법화된 점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범죄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처럼 형벌과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 ② 현행법은 모든 유형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과 보호처분의 병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③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사람을 행위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지, 가정폭력의 비범죄화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가정폭력 개념의 재구성과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정립

「가정폭력처벌법」은 2012년 1월 17일의 개정과 2014년 12월 30일의 개정으로「성폭력특별법」보다 가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성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재정의하고 「성폭력특별법」제5조는 삭제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족관계 사이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가정구성원”의 재구성

- ① 「가정폭력처벌법」은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 중 형제자매에 대하여 동거하지 않으면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민법」의 “가족” 범위와 같이 하거나 「민법」의 “가족” 범위보다 넓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가정폭력처벌법」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가정폭력모범입법례」에 따라 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가족이 아닌 타인인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취지나 효과가 의문시된다.
- ③ 1990년 1월의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인척관계로 전환되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이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용어의 대체가 필요하다.

(2)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1) 가정폭력 관련 사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배상명령 등

사법제도의 시행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정부와 법원, 가정폭력 관련 인권단체, 상담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담당자의 교육 강화

가정폭력사건의 사법담당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법원의 증설

- ① 「가정보호사건의 특수성과 처리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가정법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가정보호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해 단독 판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서 제11조의2(보수교육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교육의 내용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가 말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3)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마련

2013년 12월 3일, 한국여성의 전화 주최 토론회 발표에 의하면 판결이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가해자(남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아내)가 가해자(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다만,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하여 형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들이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행위자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상시 대면해야 하고 자녀나 부모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강박감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공포감과 심리적 폐해는 성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보다 더욱 크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당방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과제

(1) 가정폭력방지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1)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효화와 피해자·가해자 교육의 실시

- ①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 ②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가정폭력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와 영향, 「가정폭력특별법」의 요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이 소속한 관계장관과 협력하여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과 성평등 통합교육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감의 회복을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⑤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은 보호처분에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않은데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와 민간단체의 가정폭력 방지 정책에 관한 협력 증진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민간단체나 상담기관들을 적극 참여시켜 거버넌스의 협력체제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나 상담기관들의 가정폭력 방지 활동에 적극

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상담기관, 관련 민간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알고 활용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와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시행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의 전문화와 지원 강화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실시에 있어 상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므로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상담기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법전문가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긴급전화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가정폭력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의 정비

- ① 「가정폭력특별법」의 시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법제도와 사회서비스, 예방교육 등에 관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정부의 통계는 법의 시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불충분하고 정확치도 않다.
- ②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별 통계가 없다. 또한 가정폭력 유형과 조사항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